

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8-14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5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「착한가격업소」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지정(안 제3조)

-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며, 시장이 연 1회 이상 지정함.

○ 이용 활성화(안 제5조)

-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·운영할 수 있으며,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.

○ 지원(안 제7조)

-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, 종량제봉투 지원 및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음.

○ 사후관리(안 제8조)

-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- 조례안 : 붙임 1
- 조문대비표 : 붙임2(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)
-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사항 없음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19. 2. 28. ~ 2019. 3. 20. 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- 방침결정문 : 붙임4

<붙임1>

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착한가격업소”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, 위생·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지정)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“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”(이하 “지정지침”이라 한다)에 따르며,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연 1회 이상 지정한다.

제4조(영업자의 협조) 착한가격업소 및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지침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이용 활성화)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모니터 요원 운영)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(이하 “모니터 요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

1. 모니터 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,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2. 모니터 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지역·성별·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3.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- 가.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
- 나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- 다.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
- 라.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1.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
2.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
3.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,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
4.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“착한가격업소” 지정 표지판 교부
2. 종량제봉투 지원
3.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
4. 그 밖에 시장이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을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모니터 요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상생경제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상생경제과장 김종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소비자보호팀장 지영현
	담당자 성명·전화	선서경 (행정 2842)

< 불임 2 >

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 조문 대비표

당초 조례안	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 조문
제3조(지정)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“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”(이하 “지정지침”이라 한다)에 따르며,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연 1회 이상 <u>지정할 수 있다.</u>	제3조(지정) <u>지정한다.</u>

<붙임3>

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안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제3조제2항)

1. 비용발생요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, 제6조, 제7조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착한가격업소 지원·홍보 및 모니터요원 운영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019년 지원계획 : 17,200천원(전액 시비) |
| ○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: 15,000천원 |
| ○ 착한가격업소 캐리커쳐 등 홍보물 제작 : 1,200천원 |
| ○ 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: 1,000천원 |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 : 민생경제국 상생경제과장 김종수(2270)

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8-148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. 6. 24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,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 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안 제6조제1항의 각 호를 항으로 정비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각 목을 호로 정비 함. (안 제6조)
-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 수당 지급 근거 신설. (안 제6조제5항)

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(이하 “모니터 요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

안 제6조제2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모니터 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,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③ 모니터 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지역·성별·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④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1.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
 2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 3.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
 4.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⑤ 시장은 위촉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6조(모니터 요원 운영)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(이하 “모니터 요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1. 모니터 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,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2. 모니터 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지역·성별·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p> <p>3.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가.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</p> <p>나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</p> <p>다.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</p> <p>라.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</p>	<p>제6조(모니터 요원 운영)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(이하 “모니터 요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모니터 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,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모니터 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지역·성별·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p>
<p><신 설></p>	
<p><신 설></p>	

원 안	수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④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.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.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⑤ 시장은 위촉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.</p>
<p>② (생 략)</p>	<p>⑥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